

모두의 존엄이 꽃피는 학교

제5호

“세계인권선언, 인류의 보편적 인권 선언”

-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인권 칼럼】 세계인권선언의 실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 【인권 칼럼】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바라본 국제인권이슈(나현필, 국제민주연대)
- 【도서 추천】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그림을 읽고 이해하는 세계인권선언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안내

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12. 10. UN 총회에서 만장일치 채택

-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 제12조** 개인의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 제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출처: 「만화로 읽는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2008년)
*세계인권선언 관련영상 보기 [https://url.kr/41eu26]



세계인권선언의 실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김은희(사. 인권정책연구소 교육실장)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인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유엔 주최)에서는 만장일치로 각국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의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07년부터 제1차 NAP(2007~2011)를 수립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은 제3차 NAP(2018~2022)가 만료되는 해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정부에 제4차 NAP(2023~2027)를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NAP에 대한 총괄부처인 법무부는 이 권고와 제3차 NAP에 대한 자체 이행점검 결과에 기반해 현재 제4차 NAP를 수립 중입니다.

NAP은 사회 전반에 있어 법·제도·관행을 인권적으로 개선하여 한국 사회 내 인권 보장 상황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NAP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인권 보장 의무이자 국가의 실천적인 노력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국가 실천 관련 규정

전문에서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계 및 국제체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 내 필요한 인권 제도와 정책 추진에도 이러한 NAP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3차 NAP의 경우만 해도 권리별, 권리 주체별 과제 중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인권교육, 학생자치 등 학교 관련 다양한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매해 그 이행을 점검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기본적인 인권정책 추진과 점검에 대한 상호 점검과 지원을 고민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 내 인권정책을 위한 노력이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지향하는 법치국가의 이념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은 주권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NAP의 수립과 이행은 바로 법치주의 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4차 NAP 역시 이러한 목적 아래 현재의 인권 상황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각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점검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법무부 인권국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4차 NAP 내용 역시 올해 초부터 각계의 의견 수렴, 기존 제3차 NAP 272개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을 만들어 이제 시민들에게 선보여 점검받는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제4차 NAP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NAP 권고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NAP 권고안은 6개의 대주제, 27개 중주제, 100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NAP 권고 요약

대주제 I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 ☑ 재난·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혐오 및 차별인식 개선, 온라인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제도 정비,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등을 포함

대주제 II “다양한 구성원의 차별금지과 존중받는 삶 실현”

- ☑ 우리 사회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권리 주체별 인권정책을 제시

대주제 III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 ☑ 간접고용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과제와 팬데믹 상황에서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 및 고령화 시대 그 비중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돌봄노동자와 관련한 과제를 제시

대주제 IV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 ☑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라는 중주제 아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의 핵심과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기준과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약 이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조

대주제 V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

- ☑ 국가권력 못지않게 시민의 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인권적 견인을 강조하고,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 및 구제제도 마련을 핵심과제로 제시

대주제 VI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등을 제시

사회의 구성원이자 인권의 당사자로서 이러한 인권적 흐름을 공유하고, 정책적 강약에 대한 시민적 인식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9조 1.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사명(duty)을 진다”라고 천명한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국가가 주는 대로 받는 수동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어’인 능동적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체계가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시민적 지지의 확보야말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행정으로 하여금 관련한 법 제도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이행할 의무를 다하게 할 가장 강력한 장치일 것입니다. 모든 아동·청소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시민적 사명(duty)을 부여받은 시민인 보호자로서 여러분께 제안해 봅니다. 우리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NAP 권고안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고 이후 진행될 법무부의 제4차 NAP 수립 상황을 같이 지켜보면 어떨까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NAP 권고안 전문보기 [https://buly.kr/8TIF8t]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바라본 국제인권이슈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전쟁과 대량학살 뒤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인류는 전쟁뿐만 아니라 야만적이고 반인도적인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대량 학살한 홀로코스트와 일본 제국주의의 갖은 만행이 그러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실험하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살해하는 모습을 본 인류는 UN을 만들면서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것과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1948년 12월 10일,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인권에 관하여 지향해야 할 목표와 원칙을 명시한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UN은 여러 가지 제도를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한국 전쟁 당시에 UN군 파견을 결정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익숙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뿐만 아니라 UN의 다양한 기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인권 관련 기구들이 아니라도 UN의 모든 기구들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인권기준과 국내법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이행하는 것도 UN 회원국의 지방정부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하려는 노력입니다.

약속을 앞장서서 깨트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앞서 언급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에게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고, 지구촌의 평화를 지킬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핵무기는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사용한 이후에 어떤 국가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폭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위협하면서 핵무기가 현실의 위협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올해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이길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두었던 우크라이나에서 시민들의 선택으로 EU 가입을 포함한 친서방노선을 주장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병합하였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결국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국제사회는 큰 후폭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가격의 급등으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구촌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민간인 및 민간인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계속해왔고, 러시아 군 퇴각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성폭력 및 집단 학살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우크라이나의 전기 및 수도시설을 공격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인도적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동안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킬 책임을 부여받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핵무기 사용 위협까지 하고 있지만, UN은 러시아를 당장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와 사법절차가 시작될 수 있겠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왔던 UN으로 상징되는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체제가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세계인권선언 제정의 초심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2월에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군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는 인류가 지난 70년 동안 지켜왔던 인권과 평화의 약속을 2차 세계대전 시절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활동과 함께, 러시아의 미얀마 군부 지원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행동 등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민과 우크라이나 이주민도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어느새가 우리는 쉽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에 대해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인류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세계인권선언을 만들던 초심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세계는 더 연결되었고,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비극은 다른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으로 상징되는 약속의 이행이 70년 전보다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도 러시아를 비롯한 어느 국가도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한국 시민들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이건 반드시 국제사회로부터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군비 축소를 통해 더 많은 자원이 교육과 복지 및 기후 위기 대응에 쓰이도록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손쉽게 국제사회의 약속을 깨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인 한국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다른 국가들의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수준이 향상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물론, 한국 기업이 전 세계에서 고용하고 있는 현지 노동자와 K-POP을 좋아하는 팬들을 포함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개선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에 대해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포함하여 세계 곳곳에서 애도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재난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해 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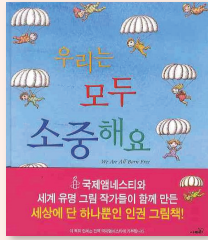
세계인권선언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인권도서 추천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그림을 읽고 이해하는 세계인권선언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그림으로 만나는 세계인권선언)

- 저 자** 국제엠네스티
- 그 림** 존 버닝햄, 홍성담 등 28명의 세계 유명 그림 작가
- 출판사** 사파리
- 발간일** 2008. 9. 30.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 그림으로 만나는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엠네스티를 중심으로, 존 버닝햄, 홍성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20여 명이 모여 공동 작업한 아름다운 인권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아동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인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켜나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내용 출처: 교보문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란?

-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규범
- 공동체의 책무, 혐오표현 금지 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권,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선거권,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규정함

“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의 인권을 보호받고 싶다면 학생인권옹호관을 찾아주세요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되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교 인권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제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신청 방법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관할지역	수원 평택 안성 성남 용인 여주 이천 광주하남 양평	안양과천 안산 화성오산 부천 군포의왕 광명 김포 시흥	고양 파주 동두천양주 연천 의정부 구리남양주 가평 포천
전화상담	031-820-0633	031-820-0634	031-820-0633-4
방문상담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3층 학생인권담당실		
구제신청	경기학생인권익광장 홈페이지(https://more.goe.go.kr/shr/index.do)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신청'		

※ 전화 및 방문상담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구제신청 등의 청원권 행사는 비밀 보장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괄·검토] 박정행(학생생활교육과 과장)

이창휘(학생생활교육과 사무관)

[기획·편집] 최지혜(학생생활교육과 학생인권옹호관)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발행일] 2022년 11월

[디자인] PP디자인(031-247-2227)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실린 글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우리 교육청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